

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문 화 위 원 회
전문위원 손 자 용

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11월 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1월 1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여성정책관, 복지분야 기능 강화, 도정 분야별 현안추진을 위한 팀 신설, 명칭변경과 업무분장 조정 등 효율적인 조직으로 재정비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□ 기구조정 : 1실 6국 1단 1본부 → 변동 없음

○ 명칭변경(안 제5조)

- 정책관리실 → 기획조정실
- 문화여성환경국 → 문화관광환경국

○ 이관조정 : 문화여성환경국 여성정책과 → 여성정책관

- 기타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

□ 실·국 분장사무 조정

- 신설(경제통상국) : 경제분야 수도권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 (안 제 9조)
- 일부삭제(문화여성환경국) (안 제11조)
 - 여성기획, 권익증진, 가족지원, 다문화, 청소년에 관한사항

□ 사업소 분장사무 조정

- 신설(여성발전센터) :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(안 제 52조)

4. 검토의견

개정조례안은 여성정책관, 복지분야 기능 강화, 도정 분야별 현안추진을 위한 팀 신설, 명칭변경과 업무분장 조정 등 효율적인 조직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것으로,

주요내용은

- “정책관리실”을 “기획조정실”로, “문화여성환경국”을 “문화관광환경국”으로 명칭을 변경하며,
- 문화여성환경국 여성정책과를 여성정책관실로 이관하며, 이에 따라 문화여성환경국 분장사무 중 여성기획, 권익증진, 가족지원, 다문화, 청소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,
- 경제통상국 분장사무에 경제분야 수도권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,

- 여성발전센터 분장사무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.

금번 개정조례안은 여성정책관, 복지분야 기능 강화, 도정 분야별 현안추진을 위한 팀 신설, 명칭변경과 업무분장 조정 등 효율적인 조직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.

붙임 :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